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1-1호 정선(여량) 군계획시설(소로1-8호) 실시계획인가 고시.....3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1호 정선(남면)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공사완료 공고.....6
- 정선군 공고 제2021-2호 정선(남면) 군계획시설(도로:소로3-8호) 공사완료 공고....7
- 정선군 공고 제2021-24호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8
- 정선군 공고 제2021-27호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1
- 정선군 공고 제2021-28호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5

- 정선군 공고 제2021-37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42
- 정선군 공고 제2021-62호 2021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원계획 공고.....5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1-1호

정선(여량) 군계획시설(소로1-8호)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43호(1978. 2. 28)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여량) 군계획시설(소로1-8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8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88-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여량) 군계획시설(소로1-8호선) 사업
- 2) 명 칭 : 정선(여량) 군계획시설(소로1-8호선) 개설사업(여량중고 옆)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기시행	금회시행	
도로	소로 1-8호선	L=107m, B=10.0m	-	L=107m, B=10.0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2) 준공예정일 : 2021. 6.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불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
음

● 토지조서

순 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
1	여량면 여량리	88-2	도	1,221.1	43.3	-	정선군			
2	여량면 여량리	86-2	도	466.6	145.6	-	정선군			
3	여량면 여량리	85-5	전	0.2	0.2	-	정선군			
4	여량면 여량리	92-13	전	164.4	161.0	-	정선군			
5	여량면 여량리	85-6	대	68.1	68.1	-	정선군			
6	여량면 여량리	85-4	전	201.9	201.9	-	정선군			
7	여량면 여량리	92-10	대	113.9	95.3	-	정선군			
8	여량면 여량리	93-7	전	60.7	59.8	-	정선군			
9	여량면 여량리	93-6	대	81.3	78.9	-	정선군			
10	여량면 여량리	93-5	전	5.6	4.8	-	정선군			
11	여량면 여량리	84-1	전	168.0	98.1	-	정선군			
12	여량면 여량리	84-7	전	120.7	120.7	-	정선군			
13	여량면 여량리	94-1	도	1,900.6	42.8	-	정선군			
계				4,573.1	1,120.5					

●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 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여량면 여량리	85-2	가옥	기와 및 벽돌	㎡	33.54	-	정선군	-	-	-
2	여량면 여량리	93-2	가옥	스레트 및 판넬	㎡	169.00	-	정선군	-	-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1호

정선(남면)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공사완료 공고

정선(남면)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증축 공사가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남면 광덕리 36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남면)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2) 명 칭 : 정선(남면)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금회시행)
 - 가. 면 적 : $A=280.10\text{m}^2$ (재활용선별장 $A=224.10\text{m}^2$, 약품창고 $A=56.0\text{m}^2$)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 정선군수(환경과)
 -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 공 일 : 2020. 12. 01

정선군 공고 제2021-2호

정선(남면) 군계획시설(도로:소로3-8호) 공사완료 공고

정선(남면) 군계획시설(도로:소로3-8)의 개설사업(2차분)이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남면 문곡리 123-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남면) 군계획시설(소로3-8호) 사업
 - 2) 명 칭 : 정선(남면) 군계획시설(소로3-8호) 개설사업(2차분)
3. 사업의 면적 (금회시행)
 - 가. 면 적 : $A=154.0\text{m}^2$ ($L=23.9\text{m}$, $B=5.0\text{m}$)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 공 일 : 2020. 12. 16

정선군 공고 제2021-24호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우리 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 제한기준이 낮아 대규모 가축사육 시설 허가신청이 집중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 지목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편입 기준을 달리 두어 가축사육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거밀집지역의 구성 기준 정비
 - 5호 이상 가구가 밀집된 주거밀집지역 구성 기준 정비(안 제2조제5호)
-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 제외 기준 마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가 악취방지시설을 갖출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 제외(안 제3조제1항제8호)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이격거리 기준 강화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이격거리 기준 강화(안 별표1)
- 제한구역 외 가축사육 제한기준 마련
 -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 가축의 사육이 환경에 고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 규정 마련(안 별표1)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01. 07. ~ 2021. 01. 27.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1월 2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환경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환경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48), 팩스(033-560-2589)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환경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한구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으로, 가축의 사육을 전부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여 키우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거밀집지역”이란 축사부지(예정포함)로부터 가장 가깝게 떨어져 있는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지목이 건물이 포함된 대지일 경우 지적도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하며,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해당 필지에 위치한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단, 기 신고·허가된 소 사육시설의 축사부지에 위치한 해당 소 사육시설 소유주 가구는 주거밀집지역을 형성하는 5호 이상의 가구에서 제외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한구역) ① 제한구역은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 보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으로, 가축의 사육을 전부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가 악취방지시설을 갖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의2제1항 중 “달성 할 수 없는”을 “달성할 수 없는”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고시 하여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축사주위는”을 “축사 주위는”으로 한다.

별지 서식 ‘가축사육신고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2항(경과조치)를 삭제한다.

제3항(종전)을 삭제한다.

제4항(종전)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한구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3. ----- 전부 제한하는 -----.
4.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에서 정한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여 키우는 것을 말한다.	4. ----- 가축을 기르는 행위 ----- ----- -----.
5. "주거밀집지역"이란 축사부(예정포함)로부터 가장 가깝게 떨어져 있는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5. ----- ----- ----- ----- 지목이 건물이 포함된 대지일 경우 지적도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하며,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해당 필지에 위치한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단, 기 신고·허가된 소사육시설의 축사부지에 위치한 해당 소 사육시설 소유주 가구는 주거밀집지역을 형성하는 5호 이상의 가구에서 제외한다.

제3조(제한구역) ① 제한구역은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부제한구역 : 가축의 사육
이 도심지 생활환경 및 주민
보건에 직접 지장을 초래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되
는 구역.

2. 일부제한구역 : 가축의 사육
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하는구역.

② (생 략)

1. · 7. (생 략)

<신 설>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등) ①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형도면
으로 고시 하여야 한다.

제3조(제한구역) ① -----

----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으로, 가축의 사육을
전부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
가 악취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 가
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등) ①-----

달성할 수 -----

② -----

-- 고시하여야 한다.

1. · 3. <u>(생 략)</u> <u>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제한구역 안에서 별표의 가축사육 마릿수를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가축사육신고서에 의거 사육개시 10일전에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생 략)</u> 1. <u>축사주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u> 2. · 5. <u>(생 략)</u> <u>제6조(시행규칙) (생 략)</u> <u>부칙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절대금지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u> <u>부칙 ③(종전) 이 조례시행당시 상대금지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육제한 두수를 초과한 가축을 이축하여야 하고 축사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u> <u>부칙 ④(종전) 이 조례시행당시 상대금지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안에서</u>	1. · 3. <u>(현행과 같음)</u> <u><삭 제></u> <u>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현행과 같음)</u> 1. <u>축사 주위는 -----</u> -----. 2. · 5. <u>(현행과 같음)</u> <u>제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	---

<u>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가축사육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u>	
--	--

관련법령 발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젓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별표1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정선군 전역

1. 주거밀집지역
 - 소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 젓소, 사슴, 양(염소), 말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
 - 돼지, 개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m 이내 지역
 - 닭, 오리, 메추리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m 이내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도시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4.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의한 관광지와 관광특구 지정지역 및 지정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6.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한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
8. 「지하수법」 제12조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9. 「습지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습지보호구역
10.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11. 「하천법」 제7조에 의한 국가,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12.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1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 비고

-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 대상은 신축시설과 증축시설에 한정한다.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없기에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환경과장 전 광 덕

정선군 공고 제2021-27호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문화소외 지역민들의 문화참여 기회 확대,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 주민 커뮤니티공간의 활용 등 생활문화공간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생활문화센터 추가 조성에 따른 시설의 사용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는 조문 추가(안 제1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른 근거 조항 마련
- 생활문화센터 추가 조성에 따른 명칭과 위치 수정(안 제2조)
 - 기존1개소→4개소(별표1 변경)
-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일 변경(안 제5조제1항)
 - 당초 사용일 10일전→변경 5일전
- 사용료등 변경(안 제8조)
 - 유료 : 정선읍 무료 : 신동읍, 북평면, 임계면
- 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등 변경에 따른 서식 수정(안 제5조, 안제9조)
 - 별지1호, 별지3호 서식 변경
-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용시간 조정 내용 추가 (안 제1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033-560-2138), 팩스(033-560-2593), 이메일(audgml8154@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중 “정선군” 을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정선군”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0일 전까지 별지 1호 서식” 을 “5일 전까지 별지 1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3호 서식” 을 “별지 제3호서식”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정선군</u>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역문화진흥법</u> 」 제8조에 따라 <u>정선군</u> ----- ----- ----- -----.
제5조(사용허가) ①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u>10일</u> 전까지 별지 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 ----- ----- <u>5일</u> 전까지 <u>별지 1호서식</u> ----- -----.
② 사용자가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u>별지 제2호 서식</u> 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 ----- <u>별지 제2호서식</u>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문화센터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u>별지 제3호 서식</u> 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 <u>별지 제3호서식</u> ----- ----- -. ----- -----

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6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현행과 같음) <u>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	--

관계법령 발췌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④ 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건물 등을 해당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문화·예술인에게 창작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변경전〉

생활문화센터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아리샘터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1-8	

〈변경후〉

생활문화센터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아리샘터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1-8	
신동 생활문화센터	정선군 신동읍 함백로 565	
북평 생활문화센터	정선군 북평면 북평3길 73	
임계 생활문화센터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5	

■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변경전〉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1. 기본시설

(단위 : 원)

시설명 \ 구분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1층 전시실		1일	20,000	사용기준 : 오전 10:00 ~ 18:00
2층 연습실 (다목적실) 3층 음악연습실	오전		10,000	1. 사용기준 ○ 오전 : 10:00 ~ 13:00(3시간) ○ 오후 : 14:00 ~ 17:00(3시간) ○ 야간 : 18:00 ~ 21:00(3시간) 2. 사용료는 부가카치세 포함 금액임
	오후		10,000	
	야간		10,000	
3층 연습실 (녹음실 미포함)	오전		5,000	
	오후		5,000	
	야간		5,000	

2. 부대시설

(단위 : 원)

시설	단위	사용료	비 고
녹음실	1회(3시간)	10,000	

〈변경후〉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사용시설		금 액	비 고
	기본시설	부대시설		
아리샘터	전시실		20,000	사용기준(1일) : 오전 10:00 ~ 18:00
	다목적실		10,000	1. 사용기준 ○ 오전 : 10:00 ~ 13:00(3시간) ○ 오후 : 14:00 ~ 17:00(3시간) ○ 야간 : 18:00 ~ 21:00(3시간) ○ 녹음실 : 1회3시간 2.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연습실1		10,000	
	연습실2		5,000	
		녹음실	10,000	
신동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실		무료	
	연습실			
	회의실			
북평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실		무료	
	연습실			
임계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실		무료	
	연습실			

■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변경전〉

사용허가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신청인	주 소	우편번호 :			
	단 체 명		전 화	일 반() -	
				휴대폰() -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 업 자)	-	
사용목적(행사명)					
사용 시설	기본시설	☐ 1층 전시실 ☐ 2층 연습실(다목적실) ☐ 3층 연습실(☐ 녹음실 포함) ☐ 3층 음악연습실			
	부대시설				
사 용 시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사 용 횟 수	오전 : 회	합 계 () 일 () 회
	년 월 일 시 분까지			오후 : 회 야간 : 회	
기타서류		행사 및 공연 계획서 1부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정 선 군 수 귀하					

■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변경후〉

사용허가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주 소	우편번호 :			
	단 체 명		전 화	일 반() -	
				휴대폰() -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 업 자)	-		
사용목적(행사명)					
사용	기본시설				
시설	부대시설				
사 용 시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횟 수	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	합 계 () 일 () 회	
기타서류		행사 및 공연 계획서 1부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정 선 군 수 귀하

■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변경전〉

사용료감면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주 소	우편번호:			
	단 체 명		전 화	일 반() -	
				휴대폰() -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	-	
행 사 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간)			
사 용 시 설	공 간 명	☐ 1층 전시실 ☐ 2층 연습실(다목적실) ☐ 3층 연습실(☐ 녹음실 포함) ☐ 3층 음악연습실			
	기본시설				
	부대시설				
감면사유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변경후〉

사용료감면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주 소	우편번호:			
	단 체 명		전 화	일 반() -	
				휴대폰() -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	-	
행 사 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간)			
사 용 시 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감면사유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1-28호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운영이 중지된 미등록 박물관 2개소(향토박물관, 추억의박물관)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시설 확충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박물관의 명칭 및 위치 정비(안 제4조)
 - 제4조 1호 및 제3호 삭제
-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1」 개정
 - 별표 1 박물관 관람료(향토박물관, 추억의박물관 삭제)
-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표2」 개정
 - 별표 2 박물관 시설물 대관료(추억의 박물관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 (참조 : 문화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033-560-2138), 팩스(033-560-2593), 이메일(audgm18154@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

제4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향토박물관과 추억의 박물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추억의 박물관을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립 및 명칭 · 위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선군 공립 박물관 · 미술관(이 조례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설립 및 명칭 · 위치) ----- ----- ----- ----- -----.
1. 향토박물관: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동굴길 12-2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추억의박물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함백로 565	<삭 제>

관계법령 발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1]

(변경전)

박물관 관람료(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관람료	비고
향토박물관	무료	
아리랑박물관	2,000원 이상 정선아리랑상품권	
추억의박물관	2,000원 이상 정선아리랑상품권	

[별표 1]

(변경후)

박물관 관람료(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관람료	비고
아리랑박물관	2,000원 이상 정선아리랑상품권	

[별표 2]
(변경전)

박물관 시설물 대관료(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면적	사용기준	대관료	비 고
아리랑 박물관	76.51㎡	1일	35,000원	○ 기준일 1일 미만시간은 사용기준으로 본다.
추억의 박물관	68.80㎡	1일	30,000원	○ 기준일 1일 미만시간은 사용기준으로 본다.

[별표 2]
(변경후)

박물관 시설물 대관료(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면적	사용기준	대관료	비 고
아리랑 박물관	76.51㎡	1일	35,000원	○ 기준일 1일 미만시간은 사용기준으로 본다.

정선군 공고 제2021-37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별표 오류 내용을 정정하여 「정선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 제14조)
 - 도시지역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농어촌도로에 대한 기준 명확화(안 제21조)
 -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에 대한 요건(인정공고, 기본계획 고시)을 명확화.
- 별표 오류사항 정정(안 별표 5, 별표 7)
 - 별표 5, 별표 7의 조문내용의 오류사항 정정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1. 12 ~ 2021. 2. 01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0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도시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도시과

- 연 락 처 : 전화(033-560-2132), 팩스(033-560-2596)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과
- 홈페이지 : <https://www.jeongseon.go.kr>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21조제5항제1호 중 “결정 또는 지정 고시된”을 “인정공고 또는 결정·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된”으로 한다.

별표 5 제11호다목 본문 중 “차목제10호”를 “제10호”로 한다.

별표 7 제9호 중 “별표 3”을 “별표 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생 략) <u><신 설></u>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④ (생 략) ⑤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시설)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결정 또는 지정 고시된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 4. (생 략)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1. ----- ----- ----- ----- 인정공고 또는 결정·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된 ----- ----- 2. ~ 4. (현행과 같음)

[별표 5]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3호 관련)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너비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 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다. 제10호 가목부터 바목까지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라.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5호 관련)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너비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별표 5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관계법령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8의3. 도시지역 내 유희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③ 법 제51조제1항 제8호의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 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희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선군 공고 제2021-62호

2021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원계획 공고

관내 소상공인의 노후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1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정 선 군 수

I. 관련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설개선 등 예산지원)

제4조(시설개선 등 예산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
2.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II.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1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2. 사업기간 : 2021. 1. ~ 2021. 8.
3. 사 업 비 : 300백만원(군비)
4. 사업대상 : 소상공인의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및 수리
 - 영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 교체도 가능
 - (단, 단순자산성 전자제품의 경우 업소용에 한해 지원가능)

5. 지원내용

○ 시설개선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 이내 지원

(예시)

- ▶ 총사업비 4천4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2천만원 지원
- ▶ 총사업비 4천4백만원인 경우 2천만원 지원
- ▶ 총사업비 2천2백만원일 경우 1천만원 지원
- ▶ 총사업비 1천1백만원일 경우 5백만원 지원(사업비의 50% 범위내)

6. 지원범위

단위사업	세부 지원내용	비고
실내·외 간판 정비	• 사업장 홍보간판, LED간판 정비 등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외부 시설공사	• 건물외벽 및 지붕개량공사 등	
각종 부대시설 정비	• 화장실 및 정화조 등 부대시설 정비	
상품배열 개선	• 진열대, 진열 소도구 및 냉장진열대 등 교체	
노후설비 교체 및 기능 개선	• 최신장비 구입 및 필요설비 교체 등	

※ 단순자산성 전자물품은 100만원 이상의 업소용 제품에 한해 지원가능

Ⅲ. 지원대상

1. 정선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대표자)
2.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대표자)

【 소상공인의 기준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위 1, 2 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하나만 충족할 시 대상제외)

3. 고한·사북지역 가스설비 지원

4. 지원제외

-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영업주(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청일 현재 1년간 정선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와 임대차 계약서 3년 이내인 경우
- 사치, 향락, 투기 등 소비성 업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
⇒ 【참고자료 2】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 유사·중복으로 3년 이내 정선군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사업 선정 후 포기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 (2018년 이후 시설개선사업 지원자 및 포기자 제외)

IV. 지원 대상자 선정

1. 선정 우선순위

- 대표자의 연간 재산 및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적은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 지방세 과세증명서
※ 사업장 소유자와 사업주가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반영
- 해당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대표자의 정선군 내 주민등록기간과 해당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오래된 사업자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및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2. 가점요소

- 착한 가격업소, 모범업소 또는 특별한 사유(재난 등)로 군수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 관련 지정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수급권자가 대표자인 소상공인
⇒ 관련 증명서

3. 선정 기준표

선정기준		배점	평가방법
① 소득세액 및 재산세액		25	10만원 이하 25점 50만원 이하 20점 100만원 이하 15점 200만원 이하 10점 300만원 이하 5점 300만원 초과 0점
② 연간 매출과세표준		25	1천만원 이하 25점 2천만원 이하 20점 3천만원 이하 15점 4천만원 이하 10점 5천만원 이하 5점 5천만원 초과 0점
③ 대표자 주민등록기간		25	15년 이상 25점 10년 이상 20점 5년 이상 15점 3년 이상 10점
④ 해당사업 영위기간		25	1년 이상 5점
가점	차상위 계층 이하	(5)	해당 할 경우 5점
	모범사업자 해당	(5)	
합 계		100	합계점수는 가점을 포함하여 100점으로 함

V. 사업 추진 절차

1. 사업신청

- 공고기간 : 2021. 01. 13(수) ~ 2021. 01. 22(금) / 10일간
- 신청기간 : 2021. 01. 18(월) ~ 2021. 01. 22(금) / 5일간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개발부서)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서식 1, 2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과세증명서
 - ▶ 사업자와 사업장 소유자가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제출
 -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⑤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제출 : 설계서, 견적서 등
 - ▶ 부가세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시 해당 전문 면허를 소지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그이하 금액은 자율선정
 - ※ (권고사항) 사업신청 시 2개 이상의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서 청구
 - ▶ 사업비중 부가가치세는 사업주 부담
 - ⑥ 기타 참고할 수 있는 서류(차상위, 모범 소상공인 등)
 - ⑦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 신청일 현재 계약 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2. 서류 확인 및 현지 사실조사(읍면)

- 신청자에 대한 지원 대상 판단 및 사업장 현지 확인
- 주민등록기간, 상시근로자 수, 휴·폐업, 사업적정사항 조사

3. 지원 대상자 선정(정선군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

- 신청자 우선 순위 확정 : 선정 기준표에 의함
- 지원 우선 순위에 따른 지원 사업비 심의 의결 ⇨ 필요 시 서면심의
- 사업 대상자 선정 확정 및 통보 ⇨ 군

4. 사업비(보조금) 교부 신청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통장사본(자부담금이 예치된 사업주 명의의 별도 계좌 개설)
- ※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았더라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할수 있음
-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제출 : 설계서, 견적서 등
-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1,500만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설계내역서 제출
미 제출 시 보조금 미교부

5.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계획서(설계, 견적)의 적정성 및 자부담 능력 확인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교부조건 부여)
-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단,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

6. 보조사업의 시행(사업주)

-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
-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군수는 보조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업무 담당자(군, 읍면)로 하여금 현지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함
- 보조금의 회계관리는 사업 시행업체명의 통장 입금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 현금 지출 불인정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미착공시 사업취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료

7. 보조사업 정산서(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보조사업 추진 실적(정산)보고서
-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총사업비의 거래내역이 나와야함. 예) 22,000천원 공사 시행 시 22,000천원의 지출내역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사업 관련 서류, 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우선, 수기용 전자계산서 발행시는 받는자 도장과 일련번호 기입 요망), 기타 증빙서류 등
- 사업 전, 중, 후 사진 대지
- 보조금 청구서(보조금액만 기재)

8. 현지 확인 및 정산검사, 보조금 집행

-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심사
 -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경우 전문가에게 위탁 심사 의뢰
- 정산보고서의 심사결과 적합할 경우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 결과를 확정하고 보조금 지급
- 심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조치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액 감액 조치
 - 보조금 교부 결정액과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액은 다를 수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에 따라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공급가액만 인정 (보조사업자가 일반과세인 경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제외)

VI. 사후관리

1.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9(재산 처분의 제한)〉

-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부동산과 그 종물)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 (보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할 수 없음

-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 가능

2. 사후관리 기간

-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결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준용
- ▶ 3년 ⇨ 방수공사, 지붕 2년⇨조적, 급배수, 환기, 가스·배연설비
1년⇨실내의장, 미장, 타일, 창호설치

○ 건물의 대수선 : 3년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 그 외의 사항 : 1년

⇨ 리모델링(대수선 및 증축제외), 인테리어 보수, 시설물개량, 수리 등

3. 지원 사업장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관 내 관리대장 작성 비치

○ 연 1회 관리, 운영실태 점검 및 위반사항 시정조치

【 참고자료 1 】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추진 체계도



【 참고자료 2 】

사치, 향락, 투기 등 소비성 업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

- 일반유흥 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 주점업(소상공인) 제외
- 무도유흥 주점업(노래방 포함)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골프장 운영업(스크린 골프 포함)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캠블링 및 베테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 중개업, 담배 도매업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주류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원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 제품 도매업 제외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정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도박 및 게임 관련, 불건전문화 관련, 투기조장 관련)
-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업종

【서식 1】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장	상호명		업종			
	사업장 소재지		상 근로자수			
	사업자 등록번호		차 상 위 계	여, 부	모 사업자	여, 부
신청내용						
신청금액 (원)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사업기간	2021. . . ~ 2021. . .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에 따라 2021년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정선군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본인은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원이 결정될 경우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만일 신청서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신청 무효 또는 사업이 중단되는 점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지방세 과세증명서 1부. 4. 소득금액증명 1부.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6. 차상위계층 이하 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7. 모범사업자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1부. 8. 임대차계약서 사본						

【서식 2】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계획서

사 업 장 현 황	소 유		천원 ※ 부부관계 해당 여부(여, 부)		사업장 면 적	m ²	
	임 차	전세	천원			m ²	
		월세	천원			m ²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월 일 ~ 월 일				
	사 업 명						
	세 부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 역	공종	계(천원)	산출기초			비고	
	합계						
사 업 필 요 성 및 사 업 후 기 대 효 과							

※ 붙임 : 사업장 현장 사진

사업장 현장 사진

외 부

내 부

※ 필요시 현장 사진 추가 가능 : 사업이 필요한 사업장 등